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연봉제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 사장 원 명 희

2020년 6월 12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3호

군포도시공사 연봉제규정 일부개정 규정

군포도시공사 연봉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3호의 “운영수당”을 “운영수당(임원 제외)”로 한다.

9호의 “직책급여무추진비”를 “직책급여무수행경비”로 하고 “직급보조비”를 삭제한다.

[별표 1]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평 균 임 금

(단위 : 원)

구 분	평균임금의 포함범위
임 원	기본연봉, 부가급여(<u>직책급여무수행경비</u> 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<u>정액급식비</u>)
직 원	기본연봉, 부가급여(<u>직책급여무수행경비</u> , 가족수당, 자격수당, 연차수당, 당직근무수당, 위험근무수당)

※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함

[별표 2]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원 연봉 산출기준표

(단위 : 원)

현행	연 봉 제 구 성 체 계				
부 기 별	금 액	구 분		지급 시기	지급기준
기 본 급		기본 연봉	기준기본급	매월	○ 기준: <u>연봉제 및 보수규정</u>
관리업무수당			기본가산급 (%)		
명절휴가비					
<u>직급보조비</u>					
경영실적수당		인센티브 성과급 (%)		년말에 지급	○ 기준 :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○ 금액 : 연봉월액 × 지급율
<u>직책급업무수행경비</u>		부가급여		매월	○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
정액급식비					
가족수당					
자녀학비보조수당				3, 6, 9, 11월	

[별표 3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직원 연봉 산출기준표

(단위 : 원)

현행	연봉제구성체계				
부기별	금액	구분		지급시기	지급기준
기본급		기본연봉	기준기본급	매월	○ 기준: 해당직급연봉기준
명절휴가비			기본가산급 (%)		○ 기준 : 전년도 기관평가등급 ○ 금액 : 기준기본급 ×근평가율
운영수당					
정액급식비					
직급보조비					
관리업무수당					
경영실적수당		인센티브 성과급 (%)		년말에 지급	○ 기준 :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 등급적용 ○ 금액 : 연봉월액 × 지급율
대우수당	-	부가급여		매월	○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
장려수당	-				
장기근속수당	-				
직책급업무수행경비	-				
자격수당	-				
가족수당	-				
당직근무수당	-				
시간외근무수당	-				
야간근무수당	-				
휴일근무수당	-				
위험근무수당	-				
연차수당	-				
자녀학비보조수당	-			12월	
		3, 6, 9, 11월			

[별지 제1호]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연 봉 계 약 서

I. 계약사항

1. 연봉계약자

소 속	군포도시공사	직 위(직 급)	사 장
성 명		생년월일	

2. 계약기간 : 2000. 0. 0. ~ 2000. 0. 0.

3. 연봉금액

기 본 연 봉	인센티브 성과급	부 가 급 여
원(월) 원)	경영평가 결과에 따름	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준용

- (1)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, 인센티브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·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지급한다.
- (2) 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으며,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, 그 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.
- (3)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시의 기준이 되는 연봉월액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것을 말한다.
- (4)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연봉산출내역서상의 기본급으로 한다.
- (5)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(6)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, 복리후생 규정을 준용한다.
- (7)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.
- (8) 연봉산출내역서 별첨

II. 준수사항

1.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,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.

2020. . .

연봉적용대상자 : 군 포 도 시 공 사 사 장 (인)

연봉계약체결자 : 군 포 시 장 (인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, 2020년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이 태 권 (390-7615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~ 2. <생략>	1. ~ 2. <현행과 같음>
3. “기준기본급”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기본급, 운영수당, 관리업무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	3. “기준기본급”이라 함은 보수규정상 기본급, 관리업무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
4. ~ 8. <생략>	4. ~ 8. <현행과 같음>
9. “부가급여”라 함은 <u>직책급여추진비</u> 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장기근속수당, 자격수당, 연차수당, 당직근무수당, 위험근무수당, 대우수당, 장려수당을 말한다. 다만, 임원은 <u>직책급여추진비</u> 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정액급식비, <u>직급보조비</u> 를 말한다.	9. ----- <u>직책급여무수행경비</u> ----- 다만, 임원은 <u>직책급여무수행경비</u> 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정액급식비를 말한다.
10. ~ 16. <생략>	10. ~ 16. <현행과 같음>

현 행

[별표 1]

평 균 임 금

(단위 : 원)

구 분	평균임금의 포함범위
임 원	기본연봉, 부가급여(직책급여무추진비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)
직 원	기본연봉, 부가급여(직책급여무추진비, 가족수당, 자격수당, 연차수당, 당직근무수당, 위험근무수당)

※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함

개정안

[별표 1]

평 균 임 금

(단위 : 원)

구 분	평균임금의 포함범위
임 원	기본연봉, 부가급여(<u>직책급여무수행경비</u> 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<u>정액급식비</u>)
직 원	기본연봉, 부가급여(<u>직책급여무수행경비</u> , 가족수당, 자격수당, 연차수당, 당직근무수당, 위험근무수당)

현 행

[별표 2]

임원 연봉 산출기준표

(단위 : 원)

현행	연봉제구성체계				
부기별	금액	구분		지급시기	지급기준
기본급		기본 연봉	기준기본급	매월	○ 기준: 당해직급 연봉기준
관리업무수당			기본가산급 (%)		
명절휴가비					
운영수당					
경영실적수당		인센티브 성과급 (%)		년말에 지급	○ 기준 :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○ 금액 : 연봉월액 × 지급율
직책급업무추진비		부가급여		매월	○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
정액급식비					
직급보조비					
가족수당					
자녀학비보조수당				3, 6, 9, 11월	

※ 2011년 1월 10일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(대통령령 제22618호)에 따라 가계지원비 및 교통지원비 삭제
→ 일반직 공무원 보수표 기본급을 준용

개정안

[별표 2]

임원 연봉 산출기준표

(단위 : 원)

현행	연봉제구성체계				
부기별	금액	구분		지급시기	지급기준
기본급		기본 연봉	기준기본급	매월	○ 기준: <u>연봉제 및 보수규정</u>
관리업무수당			기본가산급 (%)		
명절휴가비					
<u>직급보조비</u>					
경영실적수당		인센티브 성과급 (%)		년말에 지급	○ 기준 : 당해연도 경영평가등급 ○ 금액 : 연봉월액 × 지급율
<u>직책급업무수행경비</u>		부가급여		매월	○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
정액급식비					
가족수당					
자녀학비보조수당				3, 6, 9, 11월	

현행

[별표 3]

직원 연봉 산출기준표

(단위 : 원)

현행	연봉제구성체계				
부기별	금액	구분		지급시기	지급기준
기본급		기본연봉	기준기본급	매월	○ 기준: 해당직급연봉기준
명절휴가비			기본가산급 (%)		○ 기준 : 전년도 기관평가등급 ○ 금액 : 기준기본급 ×근평가율
운영수당					
정액급식비					
직급보조비					
관리업무수당					
경영실적수당		인센티브 성과급 (%)		년말에 지급	○ 기준 :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 등급적용 ○ 금액 : 연봉월액 × 지급율
대우수당	-	부가급여		매월	○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
장려수당	-				
장기근속수당	-				
직책급업무추진비	-				
자격수당	-				
가족수당	-				
당직근무수당	-				
시간외근무수당	-				
야간근무수당	-				
휴일근무수당	-				
위험근무수당	-				
연차수당	-			12월	
자녀학비보조수당	-			3, 6, 9, 11월	

※ 2011년 1월 10일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(대통령령 제22618호)에 따라 가계지원비 및 교통지원비 삭제
→ 일반직 공무원 보수표 기본급을 준용

개정안

[별표 3]

직원 연봉 산출기준표

(단위 : 원)

현행	연봉제구성체계				
부기별	금액	구분		지급시기	지급기준
기본급		기본연봉	기준기본급	매월	○ 기준: 해당직급연봉기준
명절휴가비			기본가산급 (%)		○ 기준 : 전년도 기관평가등급 ○ 금액 : 기준기본급 ×근평가율
운영수당					
정액급식비					
직급보조비					
관리업무수당					
경영실적수당		인센티브 성과급 (%)		년말에 지급	○ 기준 :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 등급적용 ○ 금액 : 연봉월액 × 지급율
대우수당	-	부가급여		매월	○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
장려수당	-				
장기근속수당	-				
직책급업무수행경비	-				
자격수당	-				
가족수당	-				
당직근무수당	-				
시간외근무수당	-				
야간근무수당	-				
휴일근무수당	-				
위험근무수당	-				
연차수당	-				
자녀학비보조수당	-			12월	
		3, 6, 9, 11월			

○ 기준: 해당직급연봉기준

○ 기준 : 전년도
기관평가등급
○ 금액 : 기준기본급
×근평가율

○ 기준 : 당해연도 기관
및 개인평가 등급적용
○ 금액 : 연봉월액
× 지급율

○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

현 행

[별지 제1호]

연 봉 계 약 서

I. 계약사항

1. 연봉계약자

소 속	군포도시공사	직 위(직 급)	
성 명		생 년 월 일	

2. 계약기간 : 20 . . . ~ 20 . . .

3. 연봉금액

기 본 연 봉	인센티브 성과급	부 가 급 여
원(월 원)	년말에 지급	

- (1)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, 인센티브 성과급은 년말에 지급한다.
- (2) 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 될 수 있으며,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, 그 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.
- (3)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시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.
- (4)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으로 한다.
- (5)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(6)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, 복리후생규정을 준용한다.
- (7)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.

II. 준수사항

1.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,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.

20 . . .

연봉적용대상자 : 군포도시공사 사장 (인)

연봉계약체결자 : 군 포 시 장 (인)

군포도시공사

개정안

[별지 제1호]

연 봉 계 약 서

I. 계약사항

1. 연봉계약자

소 속	군포도시공사	직 위(직 급)	사 장
성 명		생년월일	

2. 계약기간 : 2000. 0. 0. ~ 2000. 0. 0.

3. 연봉금액

기 본 연 봉	인센티브 성과급	부 가 급 여
원(월 원)	경영평가 결과에 따름	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준용

- (1)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, 인센티브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·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지급한다.
- (2) 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으며,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, 그 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.
- (3)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시의 기준이 되는 연봉월액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것을 말한다.
- (4)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연봉산출내역서상의 기본급으로 한다.
- (5)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(6)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, 복리후생 규정을 준용한다.
- (7)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.
- (8) 연봉산출내역서 별첨

II. 준수사항

1.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,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.

2020. . .

연봉적용대상자 : 군 포 도 시 공 사 사 장 (인)

연봉계약체결자 : 군 포 시 장 (인)